

2009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

과목 : 대지계획

제2과제(대지분석·조닝)

배점 : 35/100점

(주)한솔아카데미

제목 : 종교시설 신축대지 최대 건축가능영역

1. 과제의 개요

대지현황도에 제시된 대지A내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고자 한다.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건축가능영역을 구하시오.

2. 대지개요

- (1) 용도지역 : 제3종 일반주거지역
(인접대지도 모두 동일한 용도지역)
- (2) 대지구모 : 대지 평면도 참조(대지A영역)
- (3) 건폐율 : 60%이하
- (4) 용적률 : 250%이하

3. 계획조건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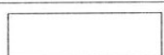
- (1)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은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.5배 이하로 한다. 단, 건축물 높이제한 산정을 위한 전면도로의 너비 기준은 각각 전면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.
- (2)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:
 - ① 높이 4m이하 부분 : 1m 이상
 - ② 높이 8m이하 부분 : 2m 이상
 - ③ 높이 8m초과 부분 :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/2 이상
- (3) 대지의 남동쪽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고,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의 지표면(EL+18기준)으로부터 높이7.5m인 곳에서 그은 사선(수평거리와 수직거리의 비가 2:1)의 범위내에서 건축가능
- (4)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수직으로 하되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한다.
 - ① 8m 및 6m 도로 : 5m 이상
 - ② 4m 도로 : 3m 이상
 - ③ 인접대지경계선 : 1.5m 이상

- (5) 계획대지내 보호수목은 대지현황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직사각형(20mX5m)의 보호수목 경계선을 설정, 건축한계선으로 하여 보호한다.
- (6) 대지현황도에 표시된 부분에 설치된 공개공지에 따라 다음조건에 의한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.
 - ① 용적률 : 해당 용적률의 1.2배 이하
 - ②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: 해당 높이 기준의 1.2배 이하
- (7) 계획대지는 절토 또는 성토를 하지 아니하며 지상1층 바닥레벨은 EL+15m로 한다.
- (8) 지상의 각층 층고는 4m로 한다.
- (9)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- (10) 별도의 옥탑층은 고려하지 않는다.

4. 도면작성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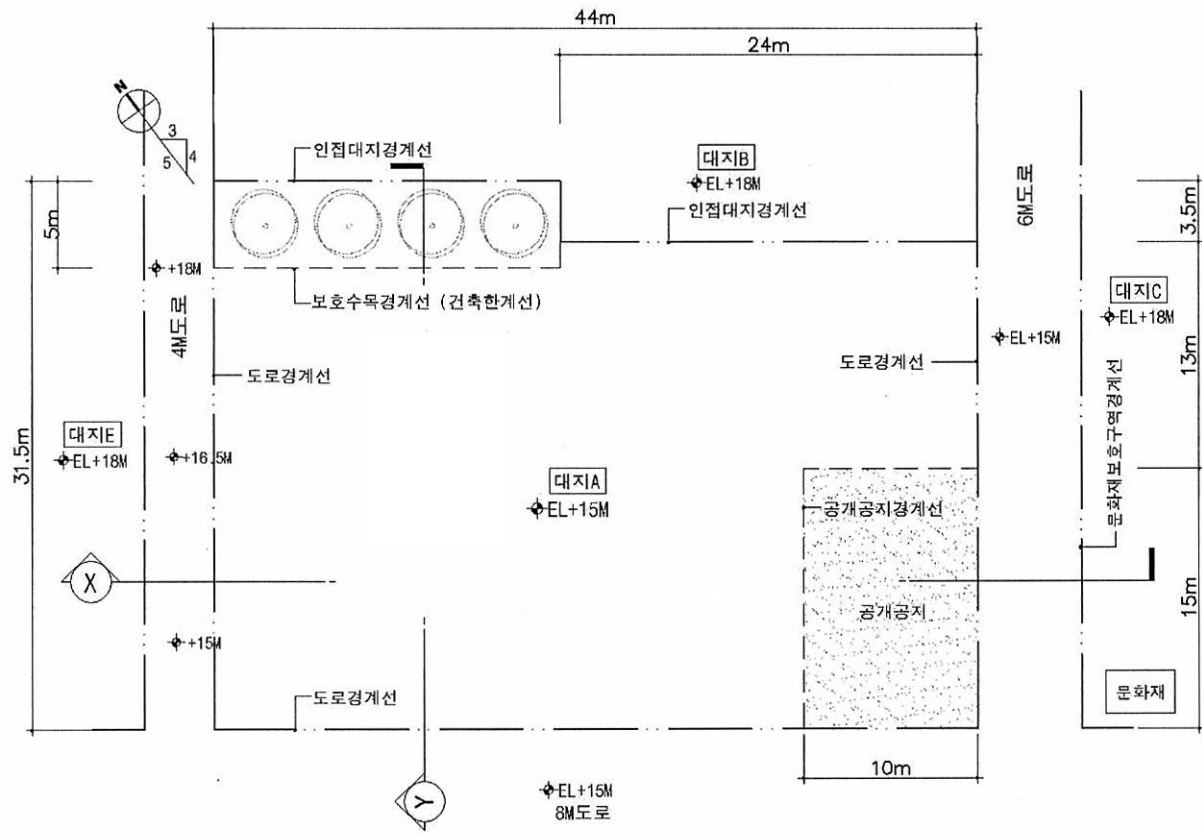
- (1) 최대 건축가능영역을 대지평면도 및 단면도에 작성하고 그 표현은 아래 <보기>와 같이 한다.(다만, 대지평면도에 중복된 층은 그 최상층만 표현)
- (2) 모든 제한선, 이격거리 및 치수를 대지평면도와 단면도에 기재하되 소수점이하는 소수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로 표기)
- (3) 단위:m
- (4)축척: 1/400

<보기>

홀수층	
짝수층	

5. 유의사항

- (1) 제도는 반드시 흑색연필로 표현(기타사용금지)
- (2)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한다.



대지 평면도
축척 : 없음

대지D
EL+13M